

일러두기



이 사례집은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법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 중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례집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례라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제한·금지될 수 있으며, 허용된 사례라도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집에 의하여도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390번으로 문의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친절히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용어의 표기

-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 ‘예비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 ‘입후보예정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말함.
-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또는 ‘법’으로 표기
- 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법 § 112①으로 표기

공직선거법상 주요 제한 · 금지사항 적용기간

1. 선거운동기간 등

구 분	적용기간	
	제19대 국선	제18대 대선
· 후보자등록신청기간 (§ 49)	2012. 3. 22. ~ 2012. 3. 23.	2012. 11. 25. ~ 2012. 11. 26.
· 선거기간 (§ 33)	2012. 3. 29. ~ 2012. 4. 11.	2012. 11. 27. ~ 2012. 12. 19.
· 선거운동기간 (§ 59)	2012. 3. 29. ~ 2012. 4. 10.	2012. 11. 27. ~ 2012. 12. 18.
· 선거일 (§ 34)	2012. 4. 11.	2012. 12. 19.

2.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관련

행 위 별	적용기간	
	제19대 국선	제18대 대선
○ 상시 제한·금지 · 기부행위 제한·금지 (§ 112)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85)	상 시	상 시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 (§ 89②) ·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 90)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93①)	2011. 10. 14. ~ 2012. 4. 11.	2012. 6. 22. ~ 2012. 12. 19.
○ 선거일전 90일까지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등에 선임되고자 할 때 시작기한 (§ 60②)	2012. 1.12까지	2012. 9. 20까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후보자 명의를 타나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 등에 광고출연 금지 (§ 93②)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 103⑤) ·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 (§ 111)	2012. 1. 12. ~ 2012. 4. 11.	2012. 9. 20. ~ 2012. 12. 19.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 108②)	2012. 2. 11. ~ 2012. 4. 11.	2012. 10. 20. ~ 2012. 12. 19.
○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 (§ 108①)	2012. 4. 5. ~ 2012. 4. 11. 18:00	2012. 12. 13. ~ 2012. 12. 19. 18:00

3.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 관련

구 분	적용기간	
	제19대 국선	제18대 대선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의 개최장소, 참석대상, 고지방법 등의 제한 (§ 140)	2011. 12. 13. ~ 2012. 4. 11.	2012. 8. 21. ~ 2012. 12. 19.
○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횟수 제한 (§ 137의2) ※ 선거기간중에는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이 금지됨	2012. 1. 1. ~ 2012. 3. 28.	2012. 9. 1. ~ 2012. 11. 26.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횟수 제한 (§ 137) ※ 선거기간중에는 정강·정책의 신문광고가 금지됨	2012. 1. 12. ~ 2012. 3. 28.	2012. 9. 20. ~ 2012. 11. 26.
○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 당원단합·수련·연수·교육 등 당원집회 개최 금지 (§ 141) ※ 당원집회 개최장소와 고지방법은 상시 제한됨	2012. 3. 12. ~ 2012. 4. 11.	2012. 11. 19. ~ 2012. 12. 19.
○ 선거기간중 · 정강·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 138, 139)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금지 (§ 144)	2012. 3. 29. ~ 2012. 4. 11.	2012. 11. 27. ~ 2012. 12. 19.

4.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제한·금지행위 관련

구 분	적용기간	
	제19대 국선	제18대 대선
○ 상시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출연 금지 (§ 86⑦) ·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86①1,2,3)	상시	상시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86②)	2012. 2. 11. ~ 2012. 4. 11.	2012. 10. 20. ~ 2012. 12. 19.

목차

Contents

제1장 _ 선거운동 개관

- | | |
|----------------------|----|
| 1. 선거운동의 정의 | 10 |
| 2.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12 |
| 3. 사전선거운동 | 14 |

제2장 _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 | |
|------------------------|----|
| 1.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 20 |
| 2. 명함 배부 | 23 |
| 3.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 25 |
| 4. 어깨띠 ·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 28 |
| 5.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29 |

제3장 _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사례

- | | |
|-------------------------|----|
| 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 32 |
|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 34 |
| 3. 서적 등 각종 광고 | 37 |
| 4. 출판기념회 개최 | 39 |
| 5.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 | 41 |



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43
7. 호별방문 및 서명·날인 운동 금지	47
8.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49
9. 의정활동 보고	51

제4장 _ 당내경선 및 정당활동

1. 당내경선 운동	56
2. 정당 집회·행사	58
3. 당원협의회	60
4.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61

제5장 _ 금품·음식물 등 제공 기부행위

1. 기부행위의 정의	66
2. 기부행위의 주체별 제한내용 등	72
3.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79
4.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	82
5. 정당의 후보자추천 및 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	85
6.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88
7.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	90

목차 Contents

제6장 _ 단체의 선거운동 및 활동

1. 단체의 선거운동	94
2.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97
3. 팬클럽 활동	99

제7장 _ 선거기간 중 자주 발생하는 주요사례

1. 선거홍보물의 게재사항 등	104
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106
3.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	108
4.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109
5. 거리행진·인사 및 연호 행위	111
6. 인터넷 광고	113
7.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115
8.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121
9. 선거사무종사자 폭행 및 자료제출 불응	123

제8장 _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1.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128
2.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130
3.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131
4.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 등	136



제9장 _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 | |
|--------------------|-----|
|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142 |
|--------------------|-----|

제10장 _ 정치자금법 주요 위반사례

- | | |
|--------------------------|-----|
| 1. 정치자금의 정의 | 148 |
| 2. 정치자금 기본원칙 | 149 |
| 3. 법인·단체관련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 151 |
| 4. 특정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 153 |
| 5.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 155 |
| 6. 친족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 156 |

부록

- | | |
|-----------------------|-----|
| 1.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 160 |
| 2.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별 부과기준 | 166 |



‘깨끗한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제1장

선거운동 개관

01

선거운동의 정의

10

02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12

03

사전선거운동

14



01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정의 관련 주요판례

✦ 선거운동의 의미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등)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됨. (대법원 2011.3.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깨끗한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02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법 § 58)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②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③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④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은 주요사례

✦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의 의미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 함은 비록 선거를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선임하기 위한 교섭행위 및 선거사무소·연설풅소 등의 물색행위, 선거운동용 자동차·확성장치 등의 임차행위,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선전물의 사전 제작행위, 연설문 작성행위, 예비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거법 해설강좌 실시행위 등을 말하는 것임. (헌재 2005.10.27. 결정 2004 헌바41)



❖ 의례적인 인사 행위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약을 사러 갔다가 그의 남편인 ○○○이 입후보한다는 이야기를 약사로부터 듣고 그의 처로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 관행이나 예절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의례적인 인사를 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도1268 판결)

❖ 목사의 신도대상 국회의원의 당선을 기원하는 의사표시

교회담임목사가 주일예배 신도들을 대상으로 “곧 총선이 앞에 있는데 우리 권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당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발언이 포함된 설교를 한 경우라도 그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및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 그 발언이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그 발언은 설교현장에 있었던 일부 교인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후보자를 포함한 기독교인 정치인들의 진정한 회개 등을 촉구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759 판결)

03

사전선거운동 (법 § 254)

-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법에서 허용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반됩니다.
- ▶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
 - 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선거일이 아닌 때에
 -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전송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주요사례

❖ 입후보예정자의 각종 모임 참석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표명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선거구민인 이장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700만원(대법원 2005.9.9. 선고 2005도2014 판결)



⇨ 변호사 사무실 이전 초청장 등에 정치현실에 관한 의견 게재

입후보예정자인 변호사가 변호사 사무실 이전 초청장 및 신문광고 문구에 통상적인 인사와 함께 사무실 이전의 실제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정치현실에 관한 피고인의 비판적 의견을 게재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120만원(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도2732 판결)

⇨ 소속하지 않은 단체의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인사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아닌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새마을 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인사를 하고 새마을 부녀회장이 그 옆에서 함께 인사를 한 경우, 그들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반됨. (대법원 2001.7.13. 선고 2001도16 판결)

⇨ 관내 공무원 등에게 전화하여 인지도 제고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가 해당 군 출신의 공무원과 함께 106명에 이르는 관내 공무원들과 통화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지지호소성 전화를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500만원(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1604 판결)

⇨ 예비후보자등록 전 선거구민에 대한 지지호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관공서 등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큰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전 ○○○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반됨.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0.10.28. 선고 2010고합196 판결)

key-point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전송 관련”



- ➡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카카오톡 포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
- ➡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있음.
- ➡ 자동 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횟수 및 신고
 - 전송횟수 : 5회 이내(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발송한 횟수 포함)
 - 사전신고 :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
-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
 -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
 -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
- ➡ 자동 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 및 전송대행업체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시 명시해야할 사항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
 - 자동 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깨끗한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깨끗한선생’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제2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01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20
02	명함 배부	23
03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25
04	어깨띠·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28
05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29

01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사무소를 알리기 위하여 개소식을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 외벽면 또는 담장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주요사례

✚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 게재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서서 시장 재직 시의 치적 사항, 지지호소 내용 등이 포함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도2903 판결)



선거사무소 게시 현수막 등 관련 주요사례

⇨ 예비후보자 현수막 등에 타인의 성명 게재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이나 예비후보자홍보물 또는 명함에 해당 지역이 선거구에 포함되는 다른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를 부각하여 게재할 때에는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됨. (2010.4.26. 회답)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타인의 사진 게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거나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다른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정당 대표자 등을 부각하여 지지·선전하는 사진을 게재하거나 입후보예정자 사진을 자신의 사진과 나란히 게재할 때에는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위반됨. (2010.3.9. 회답)

⇨ 현수막에 대선입후보예정자인 정당 대표자 등과 함께 활동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은 가능함.

⇨ 예비후보자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 게재 가능여부

예비후보자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됨. (2008.1.30. 회답)

⇨ 선거사무소에 발광현수막 및 LED간판 설치

선거사무소에 광섬유와 접목한 발광현수막을 사용하거나 LED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나, 녹화기의 사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 제100조(녹음기등의 사용금지)에 위반됨. (2010.2.3, 2007.11.2. 회답)

key-point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 ⇨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함.
예비후보자는 초청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안의 지인 등에게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초청장 등의 방법으로 개소식 행사를 알릴 수 있음
- ⇨ 정당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참석자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
↳ 다만,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 (1인당 3천원 이내, 주류제외) 제공 가능



02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등은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명함배부 관련 주요사례

❖ **경력이 게재된 국회의원 명함 배부**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업무용 명함에 경력 또는 학력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됨. (2008.1.22. 회답)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배부하는 것은 가능

❖ **여러 종류의 예비후보자 명함 동시 배부**

예비후보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것은 법 제60조의3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 위반됨. (2008.2.19. 회답)

제 2 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아파트 현관의 세대별 우편함 등에 명함배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아파트 현관의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밀어 넣어 안으로 투입하거나 틈새 사이에 끼워 놓은 경우에는 설령 그 투입행위 자체를 후보자 본인이 하였다 하더라도 명함을 직접 준 것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 위반됨.

⇨ 벌금 100만원(대법원 2004.8.16. 선고 2004도3062 판결)

key-point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지하철역구내 포함(역 입구 첫 계단도 포함)」 및 병원·종교 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신고된 자(선거 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예비)후보자 성명을 게재한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 가능



03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신고한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제 2 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홍보물 관련 주요사례

✦ 봉투 뒷면의 내용이 다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1종으로 제작하여야 하나, 발송용 봉투 뒷면에 지역마다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무방함. (2010.5.7. 회답)

⇨ 봉투 앞면에는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 시민단체 등에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내 또는 다른 선거구내에 있는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에 발송하는 것은 무방함. (2008.2.13. 회답)

⇨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사각형이 아닌 형태로 제작

예비후보자홍보물을 규격과 면수 내에서 사각형이 아닌 원형 또는 특정 형태로 제작하는 것은 무방함. (2008.2.25. 회답)

⇨ 법정 수량을 초과하여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법정수량 외 예비후보자 홍보물 877매에 우표를 붙여 선거인에게 송부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전주지방법원 2006.9.27. 선고 2006고합41 판결)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비례대표선거 지지호소 내용 게재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비례대표선거에서 소속 정당에 투표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법 제93조(탈법방법 등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됨. (2006.5.10. 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선거사무원의 추천사 게재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없음. (2010.3.25. 회답)

⇨ 예비후보자 배우자(신고한 직계존·비속 포함)의 지지·추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



key-point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표시”



- ④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라고 표시하여야 함.
- ④ 예비후보자의 명함 및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에 ‘예비 후보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후보자’라고 표시할 수는 없음.
- ④ 예비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보자’명칭 사용 가능



04

어깨띠·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 어깨띠 규격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 표지물 규격 :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표지물 관련 주요사례

⇨ 예비후보자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가 표지물 규격 범위 내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010.4.23. 회답)

⇨ LED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LED 등의 발광장치를 이용하여 어깨띠와 표지물에 게재된 문자나 기호 등이 야간에도 잘 보이게 제작하는 것은 무방. 다만, 녹화기의 사용에 해당될 경우 법 제100조(녹음기등의 사용금지)에 위반됨. (2010.2.3. 회답)



05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는 할 수 없음.(§ 109②)



전화이용 관련 주요사례

⇨ 예비후보자 등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을 이용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통화 연결음을 사용하는 것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됨. (2010.3.4. 회답)

⇨ 직접 전화통화 중 녹음된 홍보내용 전송

예비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 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제3자의 녹음된 음성을 이용하여 단순히 선거인의 통화의사를 물은 후 직접 통화를 하거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인과 직접 통화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음성으로 홍보내용을 들려주는 것은 무방함. (2010.4.23. 회답)



‘깨끗한선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제3장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사례

0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32
0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34
03	서적 등 각종 광고	37
04	출판기념회 개최	39
05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	41
0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43
07	호별방문 및 서명·날인 운동 금지	47
08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49
09	의정활동 보고	51

01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 설치 (법 § 90)

-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광고물·표시물·상징물 등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설치·게시·판매·배부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다만, ①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②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관련 주요사례

✦ 국회의원의 명절현수막 거리 게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의 거리에 명절 인사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 시기에 따라 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됨. (2009.9.28. 회답)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전물의 의미

‘선전물’이라 함은 법 제90조에 규정된 광고물, 광고시설, 표찰 기타 표시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후보자의 외모가 기재·묘사되거나 특징 등이 화체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반 시설물과 용구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04.3.11. 2003도 6650판결)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물의 의미

‘상징물’이라 함은 후보자 개인의 외형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후보자의 사고와 주장을 표상할 수 있는 물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후보자의 외형적·내면적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일반 공중에게 후보자를 연상 시킬 수 있는 물건을 말함. (대법원 2004.7.22. 2004도 1500판결)

❖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 게시

피고인은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면서 “부패 청산, 600억 주가조작 부패후보 사퇴하라, 부정부패정치청산전국 공동행동의날조직위원회”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총 8회 게시하여 대통령후보자로 출마한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200만원(울산지방법원 2008.9.19. 선고 2008고합52 판결)

0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법 § 93)

-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녹화물 등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① 다만, ①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명함을 배부하거나 ②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관련 주요사례

⇨ 정강·정책홍보물을 비당원에게 배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12월 19일 정권을 바꿉시다. 나라다운 나라 만듭시다.’란 표지의 당원용 정강·정책홍보물 180부 정도를 26개소 경로당 등에 배부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100만원(청주지방법원 2003.4.29. 선고 2003고합25 판결)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 판단기준

법 제93조(탈법방법 등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1937 판결)

⇨ 정당활동의 범주를 넘어선 선거홍보용 책자 및 당포배포

입후보예정자의 홍보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책자를 선거일에 가까운 시기에 100여 회에 걸쳐 약 15,000여 명의 많은 당원에게 당원교육을 하면서 참석한 당원에게 배포하고,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을 당포 명목으로 지역구 유권자에게 광범위하게 우편발송 방법으로 배부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150만원(대법원 2002.1.22. 선고 2001도822 판결)

⇨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이 게재된 E-mail 연하장의 발송

연하장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은 의례적인 연하장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로서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됨. (2000.2.10. 회담)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등을 나타낸 인사장 등 배부

입후보예정자가 “범충청 하나로 연합 상임의장 ○○○”이라는 명의로 “병술년은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연하장을 ‘군민회’ 회원 약 1,015명에게 발송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대법원 2007.2.9. 선고 2006도7417 판결)

⇨ 국회의원의 공익광고 출연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국회의원이 공익광고에 출연하는 때에는 위반됨. (2005.10.6. 회답)

⇨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선거운동 목적 없이 단순히 광고 제작사의 요청에 의하여 전국을 방권역으로 하는 공익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무방

⇨ 허위 성명서를 작성하여 보도자료 배부

학교 동문회가 동문인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A가 ‘위 동문회가 후보자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허위 성명서를 작성한 다음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을 통해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인터넷에 게재되도록 한 사안에서 후보자의 선거사무 관계자도 아니고 위 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도 아닌 A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200만원(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03

서적 등 각종 광고 (법 § 93, § 94)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 93②)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가능



서적광고 등 관련 주요사례

⇨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의 여러 일간지에만 반복적으로 서적 광고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책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의 여러 일간지에만 반복적으로 책을 광고하려고 하고, 서적의 광고는 책이 출판됨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직 편집 중에 있는 책을 출판도 되기도 전에 광고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출판비용(약 2,500만원) 이외에 상당한 금액의 광고비용(약 1,700만원)까지 부담하면서 광고한 것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250만원(대법원 2005.5.26. 선고 2005도1684 판결)

제 3 장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사례

⇨ 입후보예정자의 선거구 외의 지역방송 광고 출연

인천지역의 출마예정자가 인근지역이 아닌 대구지역의 지역케이블 TV의 방송광고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출연하는 것은 법 제93조(탈법방법 등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위반됨. (2008.1.16. 회답)

⇨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한 서적 광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경력 등을 부각하여 광고하는 등 통상의 서적광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2011. 2. 25. 회답)

⇨ 선거일 90일 전에 출판사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서적 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





04

출판기념회 개최 (법 § 103)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출판기념회 관련 주요사례

❖ 축하금 상당의 저서 또는 음식물 제공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싼값으로 저서를 제공하거나 통상적인 범위의 차·커피 등 음료 외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축하금 제공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2010.9.15. 회답)

❖ 입후보예정자의 수필집 무료 배부

제3자가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가하였다가 또 다른 참석자인 선거구민 5명에게 시가 5만원 상당의 입후보예정자의 수필집 5권을 무료로 배부한 것은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150만원(대법원 2007.1.17. 선고 2006도7815 판결)

제 3 장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사례

⇨ 출판기념회에서 홍보 동영상 상영

출판기념회에서 입후보예정자인 본인의 훈장 포상 및 강연 장면을 소개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지역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 방향에 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동영상을 상영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반됨. (광주고등법원 2010.7.22. 선고 2010노211 판결)

⇨ 경력 등이 게재된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사진, 경력이 게재된 초청장을 선거구민이 포함된 1,845명에게 발송하고, 선거구민 150여 명에게 초청장을 직접 배부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150만원(대법원 2007.1.17. 선고 2006도7815 판결)

⇨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출판기념회 안내초청장에는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사진, 약력뿐만 아니라 향후 실시되는 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넉넉히 호소하고 있는 문구가 게재되어 있으며, 약 1,500여 명이 참석했던 출판기념회의 규모에 비하여 그 수가 과도한 50,000명에게 초청장(65%가 선거구민임)을 발송하였고,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대상자도 12,000여명에 이르는 점 등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300만원(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3940 판결)



05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

(법 § 95)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첨부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관한 기사 등 배부와 관련한 주요사례

✦ 걷기대회에서 시장의 홍보성 기사가 게재된 잡지 배부

'07. 5. 5.에 개최된 걷기대회에서 시장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게재된 유가지인 '퀵' 5월호 1,500부를 기념품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한 행위는 걷기대회의 성공과 '퀵' 지에 대한 홍보 목적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잡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 위반되며, 나아가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시장을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반됨.

➡ 벌금 100만원(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도4492 판결)

⇨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관지 배부

대통령후보의 홍보 및 지지를 표하는 글을 게재한 기관지 약 50여부를 주택, 상가 등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된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하여 위반됨.

⇨ 벌금 80만원(광주고등법원 2008.12.5. 선고 2008노127 판결)

⇨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잡지 복사 배부

국회의원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신문사 발행의 주간지의 2면 및 3면을 2만부가량 복사하여 신문에 끼워 넣어 국회의원 지역구 일대 2만여 가구에 이를 배부함으로써 국회의원의 당락에 불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 위반됨.

⇨ 벌금 100만원(수원지방법원 2010.4.30. 선고 2010고합117 판결)





0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법 § 108)

- 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일정 기간 결과공표나 실시방법이 제한되며 일정시기가 도래하면 언론사 등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 사례



여론조사 관련 주요사례

❖ 여론조사 설문내용에 특정 후보자를 부각한 사례

설문사항에 A의 이름을 다른 입후보예정자의 이름보다 많이 나오게 함으로써 A의 인지도를 높이고, “A는 변호사입니다. 전문직능인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사항을 넣음으로써 A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등의 설문조사는 위반됨.

↳ 벌금 500만원(대법원 1998.6.9. 선고 97도856 판결)

⇨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례

인지도 조사가 후보자 경선을 불과 1~2주일 남긴 시점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실시되었고, 특히 2차, 3차 조사의 경우 설문내용들이 A의 경력을 특별히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50만원(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897 판결)

⇨ 여론조사 결과공표 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등 미포함

예비후보자가 주민 6만여 명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 내용에 여론조사결과를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응답률,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하지 아니하여 위반됨.

⇨ 벌금 150만원(창원지법 진주지원 2010.11.19. 선고 2010고합134 판결)

⇨ 입후보예정자의 육성 여론조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보아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되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제2항에도 위반됨. (2008.1.28. 회답)



key-point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사전 신고 및 금지·제한



⇨ 여론조사 실시 전 사전 신고

정당이나 언론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하는 여론조사는 제한됨.

⇨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공표 인용·보도 금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 전화이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key-point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시 준수사항



⇨ 조사자 신분 등 공개 및 피 조사자 선정방법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

⇨ 여론조사 결과공표·보도시 기재사항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 공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정당 또는 후보자는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07

호별방문 및 서명· 날인 운동 금지 (법 § 106, § 107)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제 3 장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사례



→ 호별방문 관련 주요사례

⇨ 호별방문죄의 성립요건

호별방문은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임.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도2940 판결)

⇨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의 의미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음. (대법원 2010.7.8. 선고 2009도14558 판결)

⇨ 병원입원실 방문이 호별방문죄 해당 여부

병원입원실은 불특정다수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는 아니므로 각 입원실을 방문하는 행위는 ‘호별방문’에 해당함.

⇨ 벌금 90만원(대구고등법원 2007.3.15. 선고 2007노38 판결)

⇨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 당일 선거구내 아파트 11세대를 아파트 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아파트관리인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소개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각 세대 거주자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50만원(광주지법 장흥지원 2010.11.9. 선고 2010고합35 판결)



서명·날인 관련 주요사례

⇨ 노조위원장이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 지지 서명

노조위원장이 도지사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2010년 도지사 선거시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명부 양식을 비치하고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여 소속 직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위반됨.

⇨ 벌금 70만원(전주지방법원 2010.6.29. 선고 2010고합68 판결)



08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법 § 85)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직무상 행위 또는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교육적인 특수 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주요사례

✦ 교회목사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내용 설교

목사가 '08. 4. 9. 시행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08. 4. 6. 교회에서 예배시간에 650여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단인 정당에 투표하지 말고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한것은 종교적인 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위반됨.

⇨ 벌금 150만원(인천지방법원 2008.10.30. 선고 2008고합130 판결)

제 3 장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사례

✚ 업체 부사장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노무관리 등을 담당하는 업체 부사장이 파견 근로 중이던 같은 회사 직원 23명을 격려한다는 이유로 모이게 하여 “내가 시의원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 현재 내가 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의회 의원에 당선되면 꼭 의장에 나가고 싶다. 1인당 5장씩 입당원서를 받아주면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당비를 내지 않도록 하겠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파견 근로 중이던 28명을 같은 이유로 모이게 하여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위반됨.

⇨ 벌금 150만원(광주고등법원 2006.12.7. 선고 2006노323 판결)

✚ 사립학교 교사의 학생대상 선거운동

여고의 수학교사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여고 1학년 재학 중인 A 와 B의 집으로 각각 전화를 걸어 “여고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남편이 특정 정당으로 출마하니 뽑아 달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하라”고 통화함으로써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여 위반됨.

⇨ 벌금 80만원(대전지방법원 2004.10.20. 선고 2004고합312 판결)



09

의정활동 보고 (법 §11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전 90일 전까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자신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의정활동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음.

제 3 장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사례



→ 의정활동 보고 관련 주요사례

⇨ 의정보고회장에서 선전하는 내용으로 축사

의정보고회장에서 A로 하여금 “B의원은 십여 년 동안 ○○동 빌라에 전세로 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B를 선전하는 내용의 축사를 하게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반됨.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도6450 판결)

⚡ 의정보고서에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입당사실 게재

지방의원이 자신의 의정보고서에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입당사실을 게재·배부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200만원(대법원 2005.3.10. 선고 2004도8717 판결)

⚡ 의정보고서에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해명내용 게재

자신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반론으로서 그 선정사유에 대하여 해명하는 내용의 글이나 낙천대상자 선정에 대한 제3자의 반론 등을 게재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글을 의정보고서에 게재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70만원(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717 판결)

⚡ 의정보고서에 차기선거 공약 게재

임기가 만료될 무렵에 의정보고서에 자신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 임기에 다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약을 게재하여 배부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대법원 2000.4.25. 선고 98도4490 판결)

⚡ 의정보고제한기간 중 자원봉사자 교육목적의 의정활동 설명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교육을 하면서 의정보고서를 보여주고 의원으로서의 활동실적을 설명한 것은 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 위반됨.

(대법원 1996.9.10. 선고 96도1469 판결)



‘깨끗한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제 3 장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주 발생하는 주요사례



‘깨끗한선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제4장

당내경선 및 정당활동

01

당내경선 운동

56

02

정당 집회·행사

58

03

당원협의회

60

04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61

01

당내경선 운동 (법 § 57의3)

-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다음의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경선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호소하는 행위
 - 정당이 경선후보물을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행위
- ②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당내경선 관련 주요사례

⇨ 당내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당내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는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른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2010.4.28. 회답)



❖ 언론기관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 보도 등

언론기관이 국회의원선거일전 60일부터 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1항에 따라 경선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때 공정하게 취재·보도하는 것은(중계방송 포함) 무방함. (2007.4.12. 회답 등)

↳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전에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언론기관이 위탁받아 개최하는 것은 위반

❖ 당내경선의 준비활동을 위한 사무소 개설

정당의 공천신청자가 순수하게 당내경선의 준비 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개설하는 정도는 가능하나 그 사무소에 간판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사무소 개소식을 하는 등의 행위는 경선행위로 간주하여 위반됨. (2006.3.22. 회답)

❖ 당내경선운동과 사전선거운동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 또는 경선준비행위는 시기적으로 언제나 본 선거에 앞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행위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주관적 목적의지는 종국적으로는 본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과 불가피하게 연계될 것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당내경선 등 관련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예외적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인정하여야만 당내경선 등 관련 행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임.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6300 판결)

02

정당 집회·행사 (법 § 140, § 141)

- ① 정당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개최하는 후보자선출대회 등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합니다.
- ①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창당대회 등을 제외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음



당원집회 등 관련 주요사례

⇨ 당원집회 제한기간 중 후보자선출대회 개최 가능여부

법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의 제한규정을 준수하여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2007.10.16. 회답)

⇨ 당원집회 장소로써 지방자치단체 회의실 및 대강당사용

지방자치단체가 정당이 요구한 시설·장소가 아닌 문화회관·청소년수련원·노인복지회관 등을 사용하도록 권유하였다 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2005.8.17. 회답)



⇨ 정당의 정책 홍보 연설회 개최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단순히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현안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반됨. (2005.5.16. 회답)

⇨ 창당대회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내빈 초청

창당대회 초청장 약 1,119장 가량을 당원이 아닌 동창생 또는 군민회 회원 등에게 발송한 후 창당대회를 개최한 이상, 설령 그 창당대회에는 당원만이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에 위반됨. (대법원 2007.2.9. 선고 2006도7417 판결)



03

당원협의회

(정당법 § 37)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을뿐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당원협의회 관련 주요사례

✦ 당원협의회 사무실 설치

‘사단법인 아시아 ○○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기초·광역의원선거 출마예정자 29명 전원을 동 연구소의 운영이사로 영입하고, 기초의원 공천신청자 17명으로부터 서약서, 후보사퇴서 등을 제출받는 등의 행위는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것으로 위반됨. (광주지법 2007.1.25. 선고 2006고합413 판결)



04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법 § 61의2)

정당(중앙당 및 시도당)은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구 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외벽 또는 담장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있음.

제 4 장 당내경선 및 정당활동



→ 정당선거사무소 관련 주요사례

⇨ 정당선거사무소의 관할 범위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정당은 정당 선거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하여 신고할 수 있고 해당 구·시·군의 선거에 관한 정당사무의 처리가 가능함. (2010.2.26. 회답)

⇨ 정당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게시

“기호 ○번 ○○당,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무방함. (2009.10.1. 회답)

⇨ 지역구후보자인 정당대표자의 사진은 외벽 현수막에 게시할 수 없음.

✦ 정당선거사무소장의 당원집회 등 신고

법 제141조에 따른 당원집회의 신고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구·시·군 및 읍·면·동위원회의 위원 추천시 당해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장의 명의로 신고 또는 추천할 수 있음.

(2007.7.31. 회답)





‘개끗한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제5장

금품·음식물 등 제공 기부행위

01

기부행위의 정의

66

02

기부행위의 주체별 제한내용 등

72

03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79

04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

82

05

정당의 후보자추천 및 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

85

06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88

07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

90

01

기부행위의 정의

(법 § 112)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 정의 관련 주요사례

✦ 기부행위의 의미

‘기부행위’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로 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행위를 무상으로 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에 관하여는 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관계라고 할 수 없어 기부행위가 된다고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도7085 판결)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의 의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됨.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등)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함.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등)

⇨ 기부행위 중 금품의 ‘제공’에 중간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 제112조제1항에서 정한 ‘제공’은 반드시 금품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할 것은 아니고,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使者)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그에게 금품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834 판결)

⇨ 정당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이라 함은 당해 선거구민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도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서 정한 특정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에 해당될 수 있음. (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도172 판결)

⇨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기부행위자의 특정

법 제112조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법 제112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 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등)



⇨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수혜자인 경우 기부행위 상대방 여부

“당선이 되면 시장 급료 전액을 시 재정력 향상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 발족에 기탁하고자 한다.”라는 발언 중 ‘시 선거구민 전체’는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기부행위 자체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이라고 할 수 없고 기탁 대상이 되는 ‘장학회’는 장차 발족될 예정에 불과하므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도3137 판결)

⇨ 기부행위 중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의 정도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1항의 기부행위 중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는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금품이나 이익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의례적이나 사교적인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하다면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음.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함께 한 경우 참석자 중 한 사람 또는 그 일부가 식사대금 전부를 지급하는 우리 사회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찾값을 내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실제로 찾값을 내지 아니한 사람이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869 판결)

⇨ 기부한 물품을 돌려받을 의사를 일부 가지고 있었던 경우의 기부행위 여부

기부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다대할 필요는 없으며, 나아가 기부행위는 행위자가 기부한 물품을 돌려받을 의사를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그 물품을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함. (대법원 2004.6.24. 선고 2004도1554 판결)

⇨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사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요함.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도 14720 판결)

⇨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참석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부행위 성립 여부

기부행위의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저녁식사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기부행위는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그 이후 저녁식사 참석자로부터 저녁식사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부행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음.

⇨ 벌금 700만원(대법원 2005.9.9. 선고 2005도2014 판결)



✦ 기부행위의 구성요건 해당성

법 제1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 행위’는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제1항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 할 것임.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9925 판결 등)



02

기부행위의 주체별 제한내용 등 (법 § 112 ~ § 115)

주체별	제한기간	제한·금지내용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와 그 배우자 [법 § 113]	상 시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 행위 포함) 금지
정당(당원협의회,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법 § 114]	선거기간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선거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3자(누구든지) [법 § 115]	상 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 금지

- ※ 법 제112조②에 규정된 ①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② 의례적 행위 ③ 구조적·자선적 행위 ④ 직무상 행위는 가능함.



주체별 제한내용과 관련한 주요사례

⇨ 법 제115조에 정한 ‘당해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정한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임. (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나 후보예정자가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나 후보예정자의 경우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의 ‘당해 선거구’란 전국을 의미하고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은 전국의 선거구민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그 후보자나 후보예정자도 법 제113조 제1항에 정한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834 판결)

⇨ 제3자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공모하여 기부물품 제공

제3자가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공모하여 기부물품을 제공 하였다면, 비록 제3자가 기부물품의 소유권자나 처분권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주체에는 해당함.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9507 판결)

⇨ 정당 당비 대납행위

특정인이 특정 정당의 시장 후보자로 공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당원으로 모집하고, 그 중 당비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A는 당원 46명을 모집하여 그들의 당비 합계 898,000원을 대신 납부하고, B는 6명의 당비 12만 원을, C는 5명의 당비 10만 원을, D는 3명의 당비 36,000원 중 16,000원을, E는 4명의 당비 8만 원을, E는 4명의 당비 92,000원을, F는 2명의 당비 4만 원을 각각 대신 납부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여 위반됨. (대전고등법원 2006.9.28. 선고 2006노283 판결)

⇨ 경리계장이 군수를 위하여 지방의원에게 고기선물세트 제공

군청 재무과 경리담당 공무원이 마트에서 고기상자 9개, 배 23상자, 정종 9병을 구입하면서 군수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선물 상자에 ‘중추가절 ○○군수(仲秋佳節 ○○郡守)’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붙인 뒤 군의회 운전원을 통하여 군 의원 7명에게 고기 선물세트 1개와 백화수복 1병씩을 전달하게 한 것은 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150만원(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도3774 판결)

⇨ 단체에 금품 교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자진하여 선거구내의 재개발추진 위원회에 가입한 후 ‘03. 8. 경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15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야유회 경비를 부담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대법원 2005.1.13. 선고 2004도7360 판결)



⇨ 선거구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인

수행비서 등에 대한 식사 제공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지방의회 의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의 식사대금을 결제한 행위는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입후보 예정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 입후보 예정 지역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834 판결)

⇨ 업무추진비로 지방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

지방회의회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금원이 지방회의회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250만원(대법원 2009.4.9. 선고 2009도676 판결)

⇨ 백화점 임대분양 약속의 기부행위 해당 여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특정 정당의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 경선 대의원대회에서 해당 정당의 후보로 당선되게 해주면 개점 예정인 자신소유의 백화점 내 매장 1개씩을 각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당시로서는 유상으로도 누구든지 위 매장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받는 것 자체가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유상이라고 하더라도 위 백화점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매점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도1558 판결)

⇨ 선거구민이 개최한 수련회 행사에 금품 제공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들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옷놀이대회 및 하계 수련회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여 위반됨. (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도1100 판결)

⇨ 이익제공의 약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국회의원이 A로부터 광역자치단체장의 비자금에 관한 문건을 건네받으면서 100만원을 지급하고, A의 측근인 B등을 해당 자치단체의 산하 단체에 취직시켜 주고 A의 노후를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익제공을 약속하였다면, 국회의원의 주장과 같이 비자금 문건을 제공받는 대가의 의미가 있음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A가 지급받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 받은 이익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통상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의 이익인 점에 비추어 보아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대법원 2004.7.9. 선고 2004도2729 판결)

⇨ 통상의 예를 벗어난 현금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통상의 예에 따른 현금의 방법을 벗어나 현금의 액수가 평소 매월 교회에 약 100만원의 100배에 달하고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러 달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갑자기 교회를 찾아가 담임목사의 서재에서 은밀하게 부동산 처분에 대한 십일조 명목으로 1억원을 현금 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 징역6월 집행유예2년(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 2636 판결)



⇨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 기재된 회사 달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주식회사 대표 ○○○, (주)○○환경’ 이라고 기재된 달력 1,000부를 주문 제작한 다음 회사직원들로 하여금 마을회관 37개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총 280부 시가 합계 392,000원 상당의 달력을 배포하게 하여 위반됨.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8.28. 선고 2009고합44 판결)

⇨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서 저서 구입 동문들에게 발송**

입후보예정자의 저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군수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의 홍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서를 구입하여 고교 동문 등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고 저서 200권을 권당 2,500원에 구입한 후 우체국에서 동문 82명에게 위 책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 위반됨.

⇨ 벌금 80만원(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5.19. 선고 2010고합8 판결)

⇨ **각종 사고·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회비 납부**

법 제112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정한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고·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제공 행위가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기한 회비’ 납부행위인 경우 여야 하는바, 정관 등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종전의 관행에 따라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반됨. (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도579 판결)

⇨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와는 별개인 연구소 사무실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선거구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 준 행위는 기부행위 내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반됨. (대법원 2006.4.27. 선고 2004도4987 판결)

⇨ 법 제112제2항제4호 아목에 따라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 상담은 가능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떡국, 국수 등의 식사 제공

법 제112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 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무실 겸 선거사무소로 쓰는 사무실 안에 식당을 설치하고 그 사무실을 방문하는 하루 평균 2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떡국, 국수 등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대법원 2007.2.9. 선고 2006도7417 판결)



03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법 §112)

이 법에 규정된 ①통상적인 정당활동, ②의례적 행위, ③구호적·자선적 행위, ④직무상 행위 등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합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 주요사례

⇨ 당원협의회의 자원봉사활동

당원협의회가 정당의 계획에 따라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청소년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등하교를 돕기 위한 사회봉사단을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등하교시 학교 인근에서 자율방범 등 아이들을 보호하는 자원봉사활동은 법 제112조제2항제1호 자목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무방함. (2010.7.25. 회답)

⇨ 정당의 정책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정당이 선거와 무관하게 정책개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직능·사회 단체의 대표자 등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토론자 등에게 법 제112조2항제1호 차목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무방함. (2007.6.21. 회답)

제 5 장
근로품·음식물제공 기부행위



의례적 행위 관련 주요사례

⇨ 제사에 참석한 조객에게 음식물 제공

제사에 참석한 조객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2호 파목에 따라 의례적인 행위로 무방함.
(2008.7.11. 회답)

⇨ 공공기관 신청사 준공식에 기념품 제공

국회의원이 법 제112조제2항제2호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 신청사 준공식에 직·성명을 부각되지 않게 기재한 의례적인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 무방함. (2009.12.1. 회답)



구호적·자선적 행위 관련 주요사례

⇨ 아름다운 가게에 축하화분 기증 캠페인

비영리재단법인(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가게’가 제5회 지방선거 당선자로부터 축하화분을 기증받아 이를 판매하여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3호 마목 및 사목에 따라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무방함. (2010.6.8. 회답)



✦ 종교단체 자선음악회 기부금 제공

정당 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후보자가 한센병 가족들을 위한 자선음악회에 금품을 기부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3호 차목에 따라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무방함. (2007.4.18. 회답)



직무상 행위 관련 주요사례

✦ 의정보고서 배부에 따른 인건비 제공

국회의원이 역무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에 따른 직무상 행위로 무방할 것임. (2004.8.24. 회답)



04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

(법 § 230)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법에서 정하는 수당·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



선거운동 대가 제공 관련 주요사례

◆ 법 제135조제3항의‘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됨.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 선거일 후에도 법 제135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 제135조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음.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9110 판결)

⇨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행위의 처벌대상

법 제135조제1항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외의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비록 그 자가 사실상 선거사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제135조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등)

⇨ 자원봉사자에게 소액의 음식물 제공

자원봉사자에게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자장면 등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비록 그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에서 금지한 법정수당 및 실비 외에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에 해당되어 위반됨.

⇨ 벌금 150만원(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8755 판결)

⇨ 선거사무장이 기획업무 수행관련 대가 수령

선거사무장이 후보자의 연설원고 작성, 정책공약개발 등 카피 및 기획, 사진촬영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선거기획업무를 수주한 광고기획사 운영자로부터 2회에 걸쳐 1,250만원을 수령한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외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반됨.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도6246 판결)





05

정당의 후보자추천 및 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 (법 § 230)

-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약속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②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약속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당내경선사무소에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지 여부

☞ 당내경선사무소에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지 여부

경선후보자가 경선운동의 기획·전략수립·공약개발 등 경선운동과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위반됨.

(2007.1.19. 회답)

☞ 경선후보자가 경선운동 기타 경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무소에서 경선운동과 관련 없이 청소·다과접대·차량운행·경선후보자 경호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제 5 장 금품·음식물료 제공기부행위

⇨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금품 수수

정당이 A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A, B로부터 함께 17억 원을 제공받고, C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15억 1천만 원을 제공받은 정당의 대표자에게 공직선거법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함.

⇨ 징역1년6월(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 ‘당내경선운동관계자’의 범위

‘경선운동관계자’는, 널리 당내경선운동에 관여하거나 기타 당내경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처리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당내경선사무에 종사하거나 그 절차에 관여하는 자 및 다른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는 물론, 행위자가 어떤 특정 경선후보자의 선출을 돕기 위하여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나아간 경우 해당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관계자 역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도8134 판결)

⇨ 당내경선 선거인에 대한 금전 제공

당내경선에 입후보한 자가 '10. 4. 28. 17: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철물점 주차장에서 4. 30. 실시되는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에게 6명의 경선선거인명단이 기재된 쪽지를 보여주며 “쪽지에 기재된 경선선거인들에게 나눠주고 당내경선에서 나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80만원을 교부하였고, 4. 28. 21:40경 경선선거인에게 7명의 경선선거인명단이 기재된 쪽지를 보여주며 같은 내용의 부탁과 함께 현금 90만원을 제공하여 위반됨. (서울고등법원 2011.5.24. 선고 2011노782 판결)



⇨ 경선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 제공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는 대리운전업자와 공모하여 운전기사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선선거인들을 경선투표장까지 태워주는 대가로 기사 1인당 6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리운전업자는 대리운전기사 115명을 모집하여 자원봉사자는 위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경선홍보물, 경선투표장 약도, 경선선거인들의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경선선거인 약 150명 가량을 그들의 주거지 등에서부터 경선투표장까지 태워다 주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 B에게 현금 690만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선선거인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인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위반됨. (대전고등법원 2008.1.16. 선고 2007노506 판결)



06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법 § 261)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관련 주요사례

⇨ 온천관광 등 칠순행사 관련 과태료 부과

입후보예정자인 구청장의 칠순행사에 참석하여 제3자로부터 저녁 식사와 온천관광 등을 제공받은 직능단체장 등 선거구민 17명
⇨ 총 3,600만원(1인당 120만원) 과태료 부과

⇨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참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총 354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교통편의(버스4대)를 제공받은 고속주식회사 직원 및 초등학교 동문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민 78명
⇨ 총 8,132만원(1인당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음식물을 제공받은 대학생에게 과태료 부과**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3자로부터 125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받은 대학생 37명

⇨ 총 2,055만원(1인당 56만원) 과태료 부과

⇨ **모임 관련 과태료 부과**

군수 관사에서 개최된 정당 청년위원회 모임에서 식사와 고기, 주류 등 3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각 읍·면 청년위원장·총무 등 20명

⇨ 총 1,004만원(1인당 50만원) 과태료 부과

⇨ **명절 선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후보예정자로부터 9,000원짜리 멸치세트를 택배로 받았던 선거 구민 440명

⇨ 총 3,849만원(1인당 9만원) 과태료 부과

07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

(법 § 262조의2, § 262조의3)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안에서 선거범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사례

❖ 포상금 1억2천만원 지급

입후보예정자가 2011. 1월부터 자원봉사자를 고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3,9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는 후보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액중 550만원을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를 신고함.

❖ 포상금 1억원 지급

예비후보자가 동 선거의 입후보예정자에게 표를 몰아주는 조건으로 선거준비에 소요된 비용과 향후 인사권 등 군수 권한의 1/3을 주기로 약속한 행위를 신고함.

❖ 포상금 7,430만원 지급

지방의원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사조직을 결성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8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함.



❖ 포상금 5,000만원 지급

- 후보자의 측근이 '11. 9. 26. ~ 10. 12.까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5명에게 구전홍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자원봉사자 1인당 170여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함.
-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정당선거사무소장에게 당원관리 및 조직관리 명목으로 현금 3,10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2,000만원 지급

-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지원총괄팀장이 자원봉사자 12명에게 1,4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사안을 신고함.
- 입후보예정자가 현금 1,330만원과 240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거 구민 33명에게 제공한 사실을 신고함.

❖ 포상금 1,940만원 지급

예비후보자가 조직관리를 명목으로 중간조직책에게 현금 150만원과 현금 제공대상자 명단을 제공한 사안을 신고함.

❖ 포상금 1,370만원 지급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건물과 차량을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자신의 인터뷰기사가 게재된 잡지를 구매하여 선거구민이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한 사안을 신고함.

‘개풍한선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제6장

단체의

선거운동 및 활동

01

단체의 선거운동

94

02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97

03

팬클럽 활동

99

01

단체의 선거운동 (법 § 87)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기 쉬운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 등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이 허용된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중에 법에 제한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단체의 선거운동 주요사례

⇨ 특정 후보자의 지지 등이 허용되는 단체의 선거운동

군농민회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 및 지지후보 결정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소속구성원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150만원(대법원 2002.3.12. 선고 2001도6511 판결)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 설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표지판·어깨띠 등 휴대·착용, 인쇄물 배부, 신문광고, 구내방송, 집회개최, 거리 행진·연호, 서명운동 등 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2004.1.9. 회답)

⇨ 노동조합의 인쇄물 이용 선거운동

후보자에 대한 지지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불과 선거일 3일 전에 인쇄물이 배부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지지결의가 있었던 사실이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배부된 것으로 보이고,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결정내용이나 결정과정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고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 중에 암묵적으로 위 노동조합의 지지 결정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공직 선거법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반됨.

⇨ 벌금 250만원(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도3385 판결)

⇨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후보자지지 강요행위

노동조합이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227 판결)

⇨ 시민단체 또는 시민단체 공동기구의 지지후보자 결정 등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단체들의 공동기구가
 -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 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예비후보자,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결정하는 것은 무방
 - 다만, 그 범위를 넘어 일반선거구민을 선거인단 또는 국민배심원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하거나,
 - 새로 구성된 공동기구가 지지하기로 결정한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87조제2항·제89조·제254조 그 밖의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회원용 소식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단순히 알리거나
-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도 자료의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은 무방함.
 - 다만, 그 결정내용을 별도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통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90조·제93조·제254조 그 밖의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됨.
 - 내부 지지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전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 제254조에 위반됨. (2010. 3. 31. 회답)



02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법 § 87, § 89)

- ①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 ②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조직 관련 주요사례

❖ ‘사조직’의 의미

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2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조직을 의미하므로 설사 회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조직에 해당함.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7902 판결)

⇨ 유사 선거사무기구 설치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연구소를 설치하고, 연구소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 상승 및 당선을 위한 방법을 상의하거나, 선거구민들을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를 걸어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부탁하고, 다수의 선거구민들의 휴대전화에 새해 인사를 문자로 전송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인 연구소를 설치하여 위반됨. (대법원 1999.5.25. 선고 99도675 판결)

⇨ 후보자를 위한 기존 단체 이용

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기획을 담당한 조합원은 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 필요한 어깨띠 문안, 명함 문안, 당원분석자료, 연설문 초안, 의정활동자료 및 의정보고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선거사무소 1개 이외의 이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을 이용하여 위반됨. (광주고등법원 2010.12.17. 선고 2010노229 판결)

⇨ 숙박업소에 전화기를 설치한 후 선거운동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모텔 객실을 빌린 후 객실에 일반전화를 개설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위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지역 동향을 파악하여 후보자 등에게 알려줌으로써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위반됨.

⇨ 벌금 200만원(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8.9.10. 선고 2008고합50 판결)



03

팬클럽 활동

정치인 팬클럽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활동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에 이른 때에는 법에서 제한하는 사조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정치인 팬클럽 관련 주요사례

◆ 정치인 팬클럽 대표자의 명함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표기한 명함은 통상적인 명함이라기보다는 후보자를 선전하기 위한 선전물에 해당될 것이므로 이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법 제93조(탈법방법 등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됨. (2007.1.19. 회답)

제 6 장 단체의 선거운동 및 활동

⇨ 선거운동을 위한 팬클럽 설립

정치인 팬클럽 모임에서는 입후보예정자가 2006년 시장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주자거나 유급당원 및 지지자를 모집 하자는 등의 논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일부 회원은 유급당원을 모집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회원 대부분이 2006년 시장 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정치인 팬클럽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2항 사조직에 해당하여 위반됨.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7902 판결)

⇨ 팬클럽 지부장 등이 정기모임 등을 빙자하여 회원 등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 제공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의 팬클럽이 대전 지부장 등이 대전지부 8월 정기모임을 개최하면서, 팬클럽의 중앙회 상임고문이 위 모임에 참석한 선거인 23명에게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이 정권교체이다. ○○후보가 12월 19일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대전지부장은 “대선 때 충분히 승리 할 것이다.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합계 23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 위반됨.

⇨ 징역8월 집행유예2년(대전고등법원 2008.3.26. 선고 2008노52 판결)



제 6 장 단체의 선거운동 및 활동



‘깨끗한선생’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제7장

선거기간 중 자주 발생하는 주요사례

01	선거홍보물의 게재사항 등	104
0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106
03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	108
04	어깨띠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109
05	거리행진·인사 및 연호 행위	111
06	인터넷 광고	113
07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115
08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121
09	선거사무종사자 폭행 및 자료제출 불응	123

01

선거홍보물의 게재사항 등 (법 § 64 ~ § 66)

후보자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선거벽보·선거공보·명함 등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 등에 유사학력 게재 관련 주요사례

✦ 선거홍보물에 외국학력을 기재하면서 수학기간 미기재

선거홍보물 등에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으로서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이라고 기재하면서 그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150만원(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도679 판결)

⇨ 선거벽보·선거공보·경력방송 원고에 명예박사 또는 대학교에서 인정되는 명예교수, 객좌교수 등을 후보자의 경력으로 게재하는 것은 무방 (2000. 3. 27. 회답)



⇨ 명함에 대학교내 경력관련 허위사실 게재

대학교 ‘학도호국단장’을 역임하였음에도 마치 직선제인 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한 것처럼 명함에 게재한 후 80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여 위반됨.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8404 판결)

⇨ 타인의 얼굴을 대통령의 얼굴로 교체·합성한 사진의 선거공보 게재

대통령과 정치활동을 같이 하거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 중 타인의 얼굴을 대통령의 얼굴 사진으로 교체하여 대통령과 같이 촬영한 것처럼 컴퓨터 합성기법으로 편집한 후 이를 선거공보에 게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여 위반됨. (대법원 1999.7.9. 선고 99도1814 판결)

⇨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란에 체납액 미기재

선거공보 제출 당시 최근 5년간 세금체납액은 금 44,231,000원이고 직계존속의 세금체납액은 금 1,271,000원임에도 후보자정보공개 자료면의 ‘체납액누계’란을 공란으로 작성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100만원(대법원 2007.6.14. 선고 2006도2713 판결)

⇨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란에 전과기록 미기재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는 후보자가 선거공보 2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여 위반됨. (서울고법 2011.2.18. 판결 2010노3676 선고)

0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법 § 79)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관련 주요사례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로고송 사용

홍보영상 배경음악 또는 로고송 등으로 개사곡이 아닌 기존의 음원을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상 무방함. (2009.4.21. 회답)

⇨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아파트단지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연설·대담 가능. 다만,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2007. 12. 5. 회답)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이동 중 연설

차량 이동 중 연설 가능함. (2007.11.20. 회답)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유권자의 지지 영상 방영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아닌 유권자가 출연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녹화기로 방영하는 것은 위반됨. (2010.3.25. 회답)

⇨ 녹화기를 이용한 전과사실 등의 방영

후보자들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으므로 상대후보자의 전과사실이나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언론보도내용은 소속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정책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방영하는 것은 위반됨. (2008.5.13. 회답)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옆에서 단체울동

후보자가 연설하는 유세차 옆에서 음악에 맞춰 선거운동원 6인이 단체울동을 한 것은 무방함. (대법원 2005.6.9. 선고 2004수54 판결)

⇨ 연설·대담시 선거사무원이나 일반 선거구민이 자발적으로 로고송을 함께 부르거나 울동 가능

03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

(법 § 67)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천으로 제작한 1매의 현수막 (10㎡)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읍·면·동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음.



현수막 관련 주요사례

⇨ 현수막을 도로에 가로지른 방법으로 게시

자원봉사자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얼굴사진이 실려 있는 현수막 한쪽을 빌라의 한쪽 모퉁이에 걸고 맞은편 전주에 현수막 반대쪽을 내걸어 설치하여 위반됨. (인천지방법원 2010.10.1. 선고 2010고합566 판결)

⇨ 후보자의 현수막을 동별 2매 이상 게시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기간 중에 “□□처럼 당당한 주민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기호 ○ A”라는 내용으로 1개동 안에 현수막 4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위반됨. (광주지법 2010.9.29. 선고 2010고합375 판결)



04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법 § 68)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옷·표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선거기간 중 자주 발생하는 주요 사례



어깨띠 및 소품 관련 주요사례

⇨ 전광소재 어깨띠 사용

어깨띠 제작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을 전자 발광 소재로 표시하여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은 가능함. (2006.2.13. 회답)

⇨ LED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사무원이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LED 홍보판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2010.2.23. 회답)

⇨ LED 홍보판에 동영상상을 표출하는 때에는 법 100조(녹음기등의 사용금지)에 위반될 것임

✦ 금지된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

후보자가 도로상에서 연설 중에 자신의 자원봉사자가 나눠준 불꽃놀이 용품을 들고 있던 지지자 및 학생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50여 명에게 “불꽃놀이 용품에 불을 붙여서 흔들어 달라”고 말하고, 이들은 불꽃놀이 용품에 불을 붙여 흔들면서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는 등 사용이 금지된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 위반됨.

⇨ 벌금 80만원(부산지방법원 2010.10.26 선고 2010고합577 판결)





05

거리행진·인사 및 연호 행위

(법 § 105)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거리행진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 다만, 선거사무원 등 소품 착용 가능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는 가능

제 7 장 선거기간 중 자주 발생하는 주요 사례



거리 행진 등 관련 주요사례

❖ 약기를 치면서 거리 행진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포함한 3인이 1조가 되어 단순히 장구와 북을 치면서 거리를 행진하거나, 기타와 휴대용 봉고를 치면서 밤에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단순히 한 바퀴 돌고 나가는 경우 공연에 이르지 아니하면 가능함. (2008.3.25. 회답)

⇨ 가두행진 선동 및 연호행진

후보자가 선거연설을 끝내고 군중들을 선동하여 군중과 함께 연호하면서 가두행진을 한 것은 위반됨. (광주고등법원 1974.2.20. 선고 72노 456 판결)

⇨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전거 행렬

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 10명으로 하여금 자전거를 타고 2인 1조로 열을 지어 다니며 “○○ 부탁드립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특정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게 한 것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한 것으로 위반됨. (창원지방법원 1995.12.7. 선고 95고합370 판결)





06

인터넷 광고 (법 § 82의7)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추천정당)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광고 관련 주요사례

⇨ 광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인터넷광고

후보자 또는 정당이 광고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하며, 법 제82조의7(인터넷광고)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하려는 후보자 또는 정당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2010.5.4. 회답)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터넷광고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기사를 동일하게 보여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법 제82조의7(인터넷광고)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함. (2010.4.28. 회답)

제 7 장 선거기간 중 자주 발생하는 주요 사례

✦ 키워드광고의 인터넷광고 해당여부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구매하여 키워드검색으로 “○○도지사후보”를 검색시 “○○도지사후보”가 검색되고 이곳을 클릭하였을 때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되는 키워드광고는 법 제82조의7(인터넷광고)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에 해당됨. (2006.4.18. 회답)

✦ 인터넷 동영상 광고

법 제82조의7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광고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언론사가 아닌 (주)판도라TV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후보자의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음. (2006.5.15. 회답)





07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관련 주요사례

❖ ‘허위사실’의 의미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함. (대법원 2007.8.24. 선고 2007도4294 판결)

⇨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국회의원이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은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임에도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폐지 약속을 받았다”고 홍보 내지 진술하여 이를 피고인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150만원(대법원 2009.3.12. 선고 2009도26 판결)

⇨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의 의미**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선거인들에게 보여주어 읽게 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도5279 판결)

⇨ **후보자가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거리 연설을 하면서 상대 후보자인 A가 민·형사상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없음에도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지금도 재판중인 A후보’, ‘현재에도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후보’라는 표현을 3회에 걸쳐 반복하여 A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위반됨.

⇨ 벌금 500만원(대법원 2011.3.24. 선고 2011도1078 판결)



⇨ 한·미 FTA에 찬성한 바가 없음에도 찬성하였다고 허위사실 공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가 현역 국회의원인 A가 ‘한·미FTA’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표시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설·대담차량에 탑승한 채 마이크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의원이 한·미 FTA에 대하여 찬성하였다.”는 등의 연설을 하여 A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위반됨.

⇨ 벌금 300만원(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1423 판결)

⇨ 졸업장 위조 등의 방법으로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최종 정규학력이 ‘○○전문대학교’(현재 ○○대학교)졸업임에도, 후보자등록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편명의로 ‘△△대학교 물리학과’ 졸업장의 ‘생년월일, 입학일자, 성명, 학위등록번호’등을 고쳐서 복사집에서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상 ‘후보자 명부’에 허위 기재된 학력을 공표하게 하여 위반됨.

⇨ 벌금 100만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0.7.21. 선고 2010고합218 판결)



후보자 비방관련 주요사례

⇨ 후보자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 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1936 판결)

⇨ 법 제251조 본문에서 정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1.3.10. 선고 2011도168 판결)

⇨ 후보자 비방죄에서 공연성의 의미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함. (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도45 판결 등)



⇨ 미용실에서 미용실 손님 1인에게 후보자를 비방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국회의원후보자 ○○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미용실에 찾아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은 처자식을 다 버리고 집안이 엉망진창이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여자를 만나 국회로 가서 출세를 했고, 이혼할 때 잘못해서 자식들도 자기 아빠 아니라며 안 보려 하고, 본처도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을 드나든다.”라고 후보자를 비방하여 위반됨. (부산고등법원 2008.7.16. 선고 2008노376 판결)

⇨ 후보자의 표절과 정치적 배신행위에 대한 비판 글 게시

후보자의 표절과 정치적 배신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공표한 행위가 비방행위에 해당되기는 하나, 일부 과장된 표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선거에 즈음하여 후보의 도덕성이나 정치적 이력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되고 거기에 상당성도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됨.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도1595 판결)

⇨ 소속 정당 홈페이지에 후보자 비방 글 게시

특정 정당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같은 당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의 활동, 태도 및 학력 등에 관한 사실을 부정적으로 적시한 게시물을 수회에 걸쳐 같은 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하여 위반됨. (대법원 2011.3.10. 선고 2011도168 판결)

⇨ 게시내용

- “A는 인간성은커녕 오로지 감투에만 눈이 멀은 사람이며, ~”
- “초등학교 졸업에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는 쫄쫄부라면~”
- “저런 인간 땀시 ○○당이 육을 먹는다. 돈타령하는 놈치고 뒤가 구리지 않은 놈이 없다”

✚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형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비방

후보자의 형 A가 부도를 낸 액수가 약 4억 6,000만원에 불과하고 야반도주하였다거나 특별히 빚을 갚지 않으려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후보의 친형이 되는 분이 ○○에 살았습니다. 7억여 원의 부도를 내고, 우리 어렵게 사는 ○○읍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야반도주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의 형 A를 비방하여 위반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8.7.11. 선고 2008고합18 판결)





08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법 § 103)

- ❶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주민자치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고
- ❷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제 7 장 선거기간 중 자주 발생하는 주요 사례



➔ 집회·행사 관련 주요사례

✦ ‘집회’의 의미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함.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도1649 판결)

⇨ 당원집회 형식을 취한 ‘총선필승결의대회’ 개최

‘2008 총선승리를 위한 필승 결의대회’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A, B등이 ○○을 꼭 당선시켜달라는 취지의 축사를 하고, 집회 당시 비당원에 대한 최소한의 출입통제도 하지 않았고, 집회 초청공문에 당원집회라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시의 당원은 250 ~ 300명 정도에 불과함에도 이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1,000명에서 1,2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선거일을 불과 한 달 여 남겨놓은 시기에 개최된 점 등으로 보아 이 집회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반됨. (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도2903 판결)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협회 조직관리팀장으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인 사람이 선거기간 중에 소속 회원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합대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진행하던 중, 후보자가 식당에 들어오자, 위 회원들에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의원을 소개합니다.”라고 말하고, 후보자가 회원들에게 “나를 지지해 주실 겁니까”라고 말하여 회원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약 15분 동안 회원들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음. 이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 겸 간담회를 개최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반됨.

⇨ 벌금 50만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08.8.28. 선고 2008고합149 판결)



09

선거사무종사자 폭행 및 자료제출 불응(법 § 244, § 272의2)

- ① 선관위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 ① 폭행·협박 등을 하거나, ②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 등을 은닉·훼손 또는 탈취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 등을 위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선거사무종사자 폭행 관련 주요사례

※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의 성립범위

법 제244조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는 등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상대방의 직위나 직책까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다만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선거부정감시단원이라는 신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 (부산고등법원 2008.9.10. 선고 2008노462 판결)

제 7 장 선거기간 중 자주 발생하는 주요사례

⇨ 선관위 단속요원의 단속장비 탈취

후보자의 자원봉사자가 도로에서 자신이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불특정 유권자들을 상대로 후보자의 명함 5매 가량을 교부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찍은 선관위 소속 선거부정감시단으로부터 명함교부 권한이 있는지 문의받자 선거부정감시단이 들고 있던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인 캠코더를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아 탈취하여 위반됨.

⇨ 징역8월(대전고법 2010.11.5. 선고 2010노431 판결)



자료제출 관련 주요사례

⇨ 선거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자료제출 의무 인정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법무사인 ○○을 소개하는 연하장을 발송 및 배부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의 연하장 발송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갖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상, 설사 ○○의 연하장 배부행위가 실질적으로 법무사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상 행위일 뿐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불응한 경우 처벌할 수 있음. (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5981 판결)



⇨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허위의 자료 제출

2회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행사 참석자 명단 등의 제출을 요구 받고서, 위 행사당일 선거구민중 입당원서를 쓴 사람이 30명이 넘는데도 4명에 대해서만 ‘당일 당원가입여부’란에 ○표시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당일 작성한 입당원서의 제출을 거부하여 위반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9.4. 선고 2008고합143 판결)

⇨ 자료제출요구 불응

변호사사무실에서 선관위 지도계장으로부터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문자메시지 발송근거가 된 명단 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3회에 걸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선관위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아 위반됨. (청주지법 2008.4.28. 선고 2007고합243)

‘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제8장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01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128

02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130

03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131

04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 등 136

01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등 (법 §9)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중립의무 관련 주요사례

✦ 법 제9조의 공무원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함.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임.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 (헌재 2004.5.14. 결정 2004헌나1)



⇨ 현직 장관의 정당 대표자와의 동행 및 특정 정당 지지발언

현직 장관이 소속 정당의 대표자와 함께 자신의 연고지역을 방문하여 기자간담회에서 “대구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으러 왔다.”, “대구, 경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한다.”고 발언을 하고, 당직자 등과 함께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구호를 외침. (2006. 2. 22.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 정당의 공무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되게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 또는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에 위반되게 할 수 있을 것임. (2007. 6. 21. 회답)



02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법 § 60, § 85)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주요사례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현직 군수가 예비후보등록을 하던 당일에 각 실·과·소장급 공무원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오찬모임에서 “오늘 이후부터는 선거전에 제가 몰입합니다.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유권자이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저를 다시, 동료이지만 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참석자들에게 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서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아울러 그것은 군수가 그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반됨.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도7814 판결)



03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법 § 86)

공무원 등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업적홍보 관련 주요사례

⇨ ‘업적홍보’의 의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미담사례를 발굴·소개하려는 취지였다 하여 위 홍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1997.4.25. 선고 97도320 판결)

제 8 장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 ‘업적을 홍보하게 하는 자’가 공무원 등에 한정되는지 여부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처벌됨.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17828 판결)

⇨ 동장이 시장 업적홍보

시장이 '09. 9. 1.경 시청에서 열린 읍·면·동장 회의에서 ‘그동안 각 읍·면·동의 홍보결과를 평가하고 읍·면·동장들에게 홍보대상을 종류 서민층까지 확대’하라고 훈시를 함으로써 소속직원인 동장으로 하여금 '09. 9. 10. 통장회의에서 선거구민인 통장 30명에게 ‘시장님 취임 후 그린벨트의 전면 해제로 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발전기반이 마련되었고, 시장님 취임 시 채무액이 1,038억 원이었는데 채무도 엄청나게 갚았으며, 가로화단 조성 등 사업은 빛을 내어 하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시장의 업적을 홍보함.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17828 판결)

⇨ 시장이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였다고 발언한 것은

업적홍보에 해당

동장이 시장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전 시장, 부녀회장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동을 위하여 시장님이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여 주셨다.”라고 발언하는 등 전 시장의 업적을 홍보함.

⇨ 벌금 80만원(대전고등법원 2003.1.24. 선고 2002노785 판결)



선거운동의 기획참여 등에 관한 주요사례

⇨ 공무원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및 실시에 관여 행위

- 현직 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토론회 대담자료를 작성하거나 예행 연습을 한 행위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판결)
-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자료의 작성에 관여한 행위 또는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한 행위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도4069 판결)
- 공무원이 16회에 걸쳐 후보자의 연설문, 인터뷰 자료, 선거공약, 토론회 자료, 보도자료, 당선소감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한 행위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6008 판결)
- 군 소속 공무원들과 연고가 있는 도 거주자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파악·정리하여 도지사선거에 출마한 전 군수에게 제공한 행위 (광주고등법원 2005.1.27. 선고 2004노684 판결)
- 시 선거사무담당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별 인적사항, 소속 정당, 주위 여론, 인지도, 지지기반, 후원세력, 성향, 재력,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선거참모에게 제공한 행위 (서울고등법원 2003.5.2. 선고 2003노206 판결)

⇨ 공무원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의미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도4069 판결 등)



기타 주요사례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행위’의 업무관련성 여부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명목상, 형식상이나마 당해 공무원 등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행위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그 실질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함. (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도2690 판결)



⇨ 공무원이 지방의회의 의원별 홈페이지 등에 자료 게시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지방의회 홈페이지의 일부에 개설·운영하는 의원별 홈페이지에 소속 의원을 소개하는 내용이나 영상회의록, 회의록 등 의회에서의 활동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의회에서의 활동내용이 아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영상회의록 등의 자료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위반됨. (2009.3.25. 회답)

⇨ 국회의원의 정책세미나 개최 및 관계공무원의 축사·토론 참여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선거기간전에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행위와 관계공무원이 그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거나 토론자로 참여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이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를 개최하거나, 입후보 준비를 위한 선거공약개발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 공무원이 축사를 하거나 토론자로 참여하는 행위는 위반됨. (2007.11.20. 회답)

04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 등

(법 § 86 ②, ⑦)

- ❶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사무소 방문 등이 제한되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제한됩니다.
- ❷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행사 개최·후원 등 관련 주요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의 지역위원회위원장 취임

정당의 당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정당의 당직에 취임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정당활동을 함에 있어 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등) 또는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2008.5.27. 회답)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행사 참석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는 시기에 관계 없이 참석할 수 있음.
-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같음)부터 선거일까지는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당원단합 대회에는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할 수 있음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 불우이웃돕기, 일일차집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음. (2006. 1. 4. 회답)

⇨ 선거기간 중 개최한 공원 개장식 행사의

제86조제2항제4호 위반 여부

수년간에 걸쳐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 공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전년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시민 등에게 '06. 5. 경 개장을 약속하여 왔던 공원의 개장식을 그 예정된 준공일을 기준으로 그 무렵을 전후 하여 개장식을 개최하는 것은 선거기간 중에 개최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 나목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하여 무방함.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도4069 판결)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사무소 방문 및 선거기간 중

정상적인 업무외 출장

현직 구청장이 '08. 4. 9. 실시되는 제18대 총선의 선거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A 및 B 후보가 '○○ 개발은 실패작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듣고, '08. 4. 3. 11:10경 A후보에게 항의하기 위해 구청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A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그 앞길에서 A후보를 만나 항의하였고, 같은 날 11:40경 은행 지점장실에서 B후보에게 항의함으로써 제18대 총선의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9.25. 선고 2008고합157 판결)





‘깨끗한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제9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0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142



0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법 § 59)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 범위내에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 ↳ 이 경우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를 명시해야 하고,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정보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함.

⇨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누구든지 인터넷이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인터넷·전자우편등을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언제든지 의정활동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는 행위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됨.

⇨ 성명 등의 허위표시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전자우편에 후보자 사칭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 선거일에 인터넷·전자우편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인터넷이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인터넷이나 전자우편을 이용(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방법은 제외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있음.



⇨ 미성년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인터넷이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여론조사결과 공표방법 등 위반

누구든지 법제108조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사이버상 매수행위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누구든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약속을 하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전자우편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불법 인터넷광고

정당 및 후보자가 법 제82조의7에 따라 인터넷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유료광고를 하는 행위

⇨ 투표지 촬영 인증샷 게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됨.

‘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제10장

정치자금법 주요 위반사례

01

정치자금의 정의 148

02

정치자금 기본원칙 149

03

법인·단체관련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151

04

특정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153

05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155

06

친족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156



01

정치자금의 정의

(법 §3)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장 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당내경선 후보자에게 제공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해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인데,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정당 대표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은 그 성격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당내 경선에 관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에게 제공된 금품은 정치자금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후보자가 정당의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사용한 대외활동비도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도1623 판결)



02

정치자금 기본원칙

(법 § 2)

-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됨.
- 누구든지 타인의 명이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정치자금법의 각 개별조항에 의하면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방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치자금법이 허용하는 정치자금의 수수방법은 능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부분이 불명료하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4헌바16 전원재판부).

⇨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정치자금법 제3조제2호에서 ‘기부’의 개념을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면서 금품의 무상대여까지도 기부로

본다고 명시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방송인수를 위한 로비가 성공하지 못하면 해당 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실제 이를 반환받는 등 일정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다 해도 당초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자금은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의 의미

‘사적 경비’란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대여, 사적 모임의 회비나 그에 대한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의미하고, ‘부정한 용도’란 이러한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 당비 대납행위가 정치자금법상 타인명의 기부인지

어느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그 소속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그 소속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비는 이를 기부받은 당원이 그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당비의 대납행위를 그 소속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하여 스스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타인명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058 판결).



03

법인·단체관련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법 § 31)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 즉 단체의 구성원들이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금원을 각출한 경우에도 그러한 금원의 모집·조성이 단체의 이름으로, 그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10. 12. 29. 결정 2008헌바89).

⇨ 동창회비 등으로 후보자를 후원할 목적으로 정치자금 기부

A는 ○○상고 동창인 B의 ○○일보 광고국장 승진 등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상고 제20회 동창생 등 24명을 모이도록 하여 식사를 함께 하면서 동창인 양○○의 국회의원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후원금조로 위 모임에서 각출한 200,000원과 이미 적립되어 있던 동창회비 중 800,000원을 합하여 1,000,000원을 동창회 명의로 양○○후보에 대한 후원금조로 건네줌으로써 국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고합336 판결).



04

특정행위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제 (법 § 32)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

- ▶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 ▶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제한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6307 판결).

⇨ 후보자 추천 관련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 대여행위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받는 행위 (금전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여 받은 경우 포함)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을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판결).

⇨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관련 정치자금 기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이상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활동 범위에 속한다거나 나아가 그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또는 그에 관한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05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법 § 33조)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음

⇨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한 행위의 의미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알선행위자와의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정치자금을 내게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이나 정도도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제 10 장 정치자금법 주요 위반사례

06

친족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법 § 45① 단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친족의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규제대상인지

-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단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민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 간의 정의(情誼)를 고려할 때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돈을 주고 받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를 정한 것이고, 민법 제768조에서 말하는 ‘형제자매’라 함은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복형제도 ‘친족’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7062 판결).



‘깨끗한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깨끗한 선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부록

01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160

02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별 부과기준 166

01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 89②)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설치 등 금지(§ 90)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93①)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의 개최장소와 고지의 제한
(§ 140①·②)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후보자 선출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 포함)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합니다.



❖ 상시제한행위

-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 112)
- 야유회·관광·체육대회·등산대회 등 행사에 금품 등 제공 금지 (§ 112)
- 축의·부의금품 등의 제한 (§ 112)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금지 (§ 113)
- 사전선거운동 금지 (§ 254②)
- 공무원등의 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85)
-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86①1,2,3)
-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출연 금지 (§ 86⑦)
- 사조직 설립·설치 금지 (§ 87②)
-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 89①)
-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 금지 (§ 95)
- 허위논평·보도의 금지 (§ 96)
- 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 (§ 110)
-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 230)
-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금지 (§ 244)
- 허위사실 공표 금지 (§ 250)

✦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137의2①)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 중에는 할 수 없습니다.

- ↳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함.) 연설의 요지 및 통계 자료 외에 다른 내용이 반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137)

정당의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총 70회 이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중에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 ↳ 광고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으며, 중앙당외의 당부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 광고 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 93②)
-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103⑤)
-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 111)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86②)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108②)

✦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 당원집회·당원교육 금지(§ 141①)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선거기간 중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86①5·6·7호)
 - 5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6호 :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7호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관·단체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금지(§ 87)
- 확장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91)
- 저술·연예·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92)
-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94)
-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99)

- 녹음기·녹화기 등의 사용 금지(§ 100)
- 타연설회 등의 금지(§ 101)
- 야간연설 등의 제한(§ 102)
- 각종집회 등의 제한 및 반상회 개최 금지(§ 103)
- 입당권유, 연설·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금지(§ 106)
-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109)
-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금지(§ 137)
-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금지(§ 137의2)
- 정강·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제한
(§ 138, § 139)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금지(§ 144①)
-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145)

❖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 108①)

❖ 선거일

-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59, § 254①)
- 투표마감시각(18:00)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 167②, 241①)



✦ 기타

- 선거일후 답례금지 (§ 118)
-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원 모집 금지 (§ 62⑧)
 - ↳ 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유포·비방금지 (§ 82의4②)
- 선거운동의 권유·약속을 위한 문서 등의 배부·징구 금지 (§ 93③)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 제한 (§ 98)
- 행렬·연호행위 등 금지 (§ 105)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날인받는 행위 금지 (§ 107)
-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 166의2)
 - ↳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02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별 부과기준

◆ 선거법 제261조 관련

(단위 : 만원)

처분대상행위	부과 상한액	관련 법조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표지를 달지 아니하는 행위	100	§ 63②
후보자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 방송시설 이용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용일시·이용방법 등을 방송일전 3일까지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	300	§ 71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장장치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100	§ 79⑥
정당한 사유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행위	400	§ 82의2④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위법한 정보의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00	§ 82의4④
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장소표지의 규격이나 수량이 위반하여 첨부·게시하거나 고지벽보 또는 장소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 111②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 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해당선거 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 조사를 하는 행위 ※ 다만, 신고의무가 없는 자는 제외	1,000	§ 108③
정강·정책홍보물 또는 정당기관지를 선거기간중에 소속 당원에게 배부 하기 전에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 138④ § 139③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 발간 즉시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정책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 138의2③



처분대상행위	부과 상한액	관련 법조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의 장소표지를 해당 집회후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 140④
선거일전 90일부터 당원집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 제외)를 해당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하거나, 당원집회의 장소표지를 집회후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 141 ②·④
정당의 당사 또는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100	§ 145
학교, 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부재자투표소·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200	§ 147③ § 148⑥ § 173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공고한 투표용지 모형을 훼손·오손하는 행위	200	§ 152①
선거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신고·제출의무를 게을리 하는 행위	200	§ 261④1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한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정당의 당사 선전물 포함)이나 유사기관·시설 등을 발견하여 철거·수거·폐쇄 등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	200	§ 271①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300	§ 272의3③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300	§ 272의2④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100	§ 272의2④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첨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가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200	§ 276

♣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및 양태	부 과 기준액
<p>1.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가. 금전·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권유·요구하는 행위</p> <p>나.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행위</p> <p>다.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p> <p>라. 인터넷 게시 및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대가 제공을 알선·권유·요구하는 행위</p>	<p>제공받은 가액의 50배</p>
<p>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p>	<p>제공받은 가액의 30배</p>
<p>3.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을 제공 받거나 법 제261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물품 등을 우편·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p>	<p>제공받은 가액의 10배</p>



✦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감경대상	감경사유	부과 기준액
1.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자수한 경우 가. 금전·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권유·요구하는 행위 나.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 라. 인터넷 게시 및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대가 제공을 알선·권유·요구하는 행위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전·물품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 고발 등 조치(수사기관이 알게 된 후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까지 자수하였으나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장소·방법·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5배
	나. 고발 등 조치 후 자수한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고 자수한 경우	가. 제1호의 감경사유 가목과 같음..	제공받은 가액의 2배
	나. 제1호의 감경사유 나목과 같음.	제공받은 가액의 5배
3.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을 제공받거나 금전·물품 등을 우편·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수한 경우	가. 제1호의 감경사유 가목과 같음.	제공받은 가액
	나. 제1호의 감경사유 나목과 같음.	제공받은 가액의 2배



‘깨끗한선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

정치관계법 위반사례집

▣ 발 행 2012년 2월

▣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홍춘말로 44
Tel. (02) 503-1114(대)